

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. 7. 10.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. 8. 21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사유

- 2007년도 본 예산 성립 후 교육부의 확정교부금과 서울시 결산전입금 등 추가세입재원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명예퇴직 등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,
-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과 저소득층자녀 급식비, 특수교육지원, 교과서 무상지원, 영어교육내실화, 교육복지 분야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, 학교급식시설비와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등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증액 편성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함.

3.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

가. 추경 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추경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가 액 (A-B)	증 감 율 (%)	비 고
6,012,077	5,472,014	540,063	9.9%	

나. 세입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예산액	비교증감 (%)	비 고
계	6,012,077	5,472,014	540,063 (9.9)	
국 가 부담수입	3,325,924	3,188,141	137,783 (4.3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통교부금 3,241,435 특별교부금 45,083 국고지원금 39,406
일반회계 부담수입 (지방자치단체 전입금)	2,285,365	1,984,837	300,528 (15.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전입금 2,162,473 비법정전입금 56,134 학교용지부담금 66,758
자체수입	272,427	226,227	46,200 (20.4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산수입 44,099 입학금/수업료 160,211 사용료/수수료 5,788 잡수입 39,592 이월금 22,737
지방 교육채	119,940	68,052	51,888 (76.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명예퇴직수당(증액) 56,100
주민 부담수입금	8,421	4,757	3,664 (77.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체육진흥공단 628 서울문화재단 등 36 복권기금 3,000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다. 세출 예산안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추가경정예산액 (A)		기정예산 액 (B)	비교 증감(△) (C=A-B)	주요변동내용
	금액	구성 (%)			
계	6,012,077	100	5,472,014	540,063	
인건비	3,233,161	53.8	3,152,348	80,813 (2.6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인건비 80,813 - 교원 및 지방공무원 명퇴수당 18,664 - 명퇴 부담금 부족분 54,711 - 명퇴자 증가에 따른 보수감액 △ 18,599 - 명퇴수당 증가분 9 26,037
기관운영비	35,036	0.6	34,191	845 (2.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관운영비 845 - 본청 및 교육위 운영 60 - 지역교육청 운영 241 - 평생학습관, 도서관, 사업소 운영비 544
학교운영비	382,964	6.4	370,781	12,183 (3.3%)	
사학재정지원	823,618	13.7	791,351	32,267 (4.1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학재정지원 32,267 - 재정결함 지원금 25,235 - 명퇴수당 증액 7,032
교육사업비	544,592	9.1	437,000	107,592 (24.6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교육사업비 107,592 - 정책 방향 사업 69,963 - 역점과제 13,392 - 기타 사업 24,237
시설사업비	645,963	10.7	399,399	246,564 (61.7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사업비 246,564 - 학교신설 64,111 - 교실증축 1,200 - 학교기타시설 증축 25,530 - 교육환경개선 129,614 - 학교급식시설 9,564 - 행정기관시설 507 - 지원기관시설 16,038
지방채상환	328,193	5.5	268,394	59,799 (22.3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지방채상환 59,799 - 감채 기금적립 19,799 -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 40,000
예비비및기타	18,550	0.3	18,550	0 (0.0%)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4. 교육위원회 심사결과

-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, 총 규모 6조 120억 7,780만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.
- 하지만, 세부내역에서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 15억 1,560만원 및 시설관리사업 소와 중앙평생학습관 시설비 21억원을 포함한 6개 사업 예산 총 58억 5,595만원이 감액되고, 양천고 강당 신축 설계비를 포함한 5개교의 학교 기타시설 증축비 10억 6,000만원 및 상암고 등 87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 42억 5,400만원을 포함한 총 58억 5,595만원이 증액되었음.

<서울시 교육위원회 심사·의결 내역>

 총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07 제1회추경예산액	교육위 심의 의결액	증감
세입	6,012,077,803	6,012,077,803	0
세출	6,012,077,803	6,012,077,803	0

 감액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2007. 제1회 추경예산안	심사·의결액	비교증감	비고
영어교육 내실화	6,160,222	4,644,622	△ 1,515,600	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
방과후 학교운영	15,495,765	14,982,530	△ 513,235	방과후 학교보육프로그램 신규설치
재무관리	22,142,781	21,945,666	△ 197,115	남부 세일중 토지매입
학교신설	222,250,794	221,110,794	△ 1,140,000	아현방송문화고 설계비
교육환경 개선	271,429,652	271,039,652	△ 390,000	서문여고 생활실환경개선, 창호
지원기관 시설	23,707,442	21,607,442	△ 2,100,000	시설관리사업소 중앙평생학습관
감액 합계	561,186,656	555,330,706	△ 5,855,950	

 감액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2007.제1회 추경예산안	심사·의결액	비교증감	비고
영어교육 내실화	6,160,222	4,644,622	△ 1,515,600	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설치비
방과후 학교운영	15,495,765	14,982,530	△ 513,235	방과후 학교보육프로그램 신규설치
재무관리	22,142,781	21,945,666	△ 197,115	남부 세일중 토지매입
학교신설	222,250,794	221,110,794	△ 1,140,000	아현방송문화고 설계비
교육환경 개선	271,429,652	271,039,652	△ 390,000	서문여고 생활실환경개선, 창호
지원기관 시설	23,707,442	21,607,442	△ 2,100,000	시설관리사업소 중앙평생학습관
감액 합계	561,186,656	555,330,706	△ 5,855,950	

증액 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2007.제1회 추경예산안	심사· 의결액	비교증감	비고
전문계고교 내실화지원	14,266,850	14,296,850	30,000	방이중 기술실 리모델링
교단선전화	5,993,574	6,063,574	70,000	금옥초 프로젝션 TV 및 PC 구입
기관운영	33,251,330	33,397,280	145,950	지역 교육청 노후 관용차량 교체
학교기타 시설증축	68,458,555	69,518,555	1,060,000	양천고 강당신축 설계비 외 4교
지원기관시설	23,707,442	23,800,442	93,000	학생 교육원 축령산 관리동 신축 설계비
교육환경개선	271,429,652	275,683,652	4,254,000	상암고 교육환경 개선 외 86교
행정기관시설	3,095,400	3,110,400	15,000	주차장 보수
학교급식시설	43,564,851	43,752,851	188,000	상암고 급식실 보수 외 3개교
증액 합계	463,767,654	469,623,604	5,855,950	

5. 검토의견

예산안 개요

-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450억 8,300만원과 추가확정 보통교부금 889억 9,715만원, 서울시에서 전입된 2007년도 법정전입금 추가분 2,508억 3,600만원 및 자치단체에서 전입된 비법정전입금 496억 9,200만원, 자체수입 462억원, 지방교육채 518억 8,800만원, 그리고 주민부담수입 36억 6,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,
- 명퇴수당 등 인건비 808억 1,334만원, 기관운영비 8억 4,500만원, 학교운영비 121억 8,304만원, 사학재정지원 322억 6,659만원, 교육사업비 1,075억 9,200만원 및 시설사업 2,465억 6,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 예산액 5조 4,720억 1,400만원 대비 5,400억 6,315만원(9.9%) 증액된 6조 120억 7,780만원 규모로 편성됨.
-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,
 - ▶ 세입예산의 증가 규모는 총 5,400억 6,315만원(9.9%)으로 국가부담 수입 1,377억 8,300만원(4.3%), 자치단체 부담수입 3,005억 2,800만원(15.1%), 자체수입 462억(20.4%), 지방교육채 518억 8,800만원(76.2%) 주민(기관 등) 부담 수입 및 기타지원금 36억 6,400만원(77.0%)이 증액 편성됨.
 - ▶ 세출예산은 인건비 808억 1,300만원(2.6%), 기관운영비 8억 4,500만원(2.5%), 학교운영비 121억 8,300만원(3.3%), 사학재정지원 322억 6,700만원(4.1%), 교육사업비 1,075억 9,200만원(24.6%), 시설사업비 2,465억 6,400만원(61.7%), 지방채상환 597억 9,900만원(22.3%) 등 총 5,400억 6,300만원이 증액 편성됨.

추경예산안의 주요특징

- 금번 추경에서는 목적지정 사업비 1,021억, 특별교부금·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비 80억원, 경직성경비·필요경비 2,387억원, 지방채 상환 598억원 등을 제외하면 심사를 통하여 조정가능한 사업비는 1,314억원 정도에 불과함.
- 세입부문
 - 세입부문에서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889억 9,715만원, 특별교부금 450억 8,300만원, 국고보조금 37억 324만원이 증액되어 총 1,337억 8,315만원이 증액되었음.

- 서울특별시의 법정 전입금은 2006년도 담배소비세 정산분 157억 400만원, 시세정 산분 1,125억 9,200만원, 지방교육세정산분 1,225억 4,000만원이 전입되어 총 2,508 억 3,600만원이 전입되었음.
- 「서울특별시교육지원조례」에 의하여 화장실 개선, 책걸상, 칠판교체비 등 비법정 전입금 410억 7,745만원이 전입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소속 교육기획관에서 직접 교육청과 협조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배분까지 한 후에 교육비특별 회계에 계수만 반영한 바,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인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 사전 협의·보고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음.
-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관악·동작·구로·광진·서초·강남·노원·송파·강동·강북 등 10개구 86억 1,400만원인데 예산규모가 큰 것은 복합화사업과 관련 된 것임.
- 지방교육채는 교원과 지방직공무원의 명예퇴직희망자가 예상보다 증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받은 규모인 518억 8,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국가부담임.
- 세출부분
 - 인건비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자 884명의 명예퇴직수당 474억원과 퇴직수당부담금 5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여 불용예상액 213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808억 1,334만원이 증액되었음.
 - 교육사업비는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추가된 사업비로서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 20개 분야 270억 2,600만원,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분야 18개 사업 341억 6,133만원,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분야 등 역점과제 추진에 133억 9,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,075억 9,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.
 - 시설사업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 224억 9,300만원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70억 4,212만원을 포함하여 총 2,465억 6,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학교신설에 641억 1,100만원을 비롯하여 중앙평생학습관 설립, 유아교육진흥원 설립, 영어체험교육원 설립, 교원연수원 강북센터 설립,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등 기관설치비로 160억 3,800만원, 교육환경개선 1,296억 1,400만원, 학교기타시설증축 255억 3,000만원, 학교급식시설 95억 6,400만원, 행정기관시설 및 지원기관시설에 16억 5,45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.

□ 세부분야별 검토

- 세입면에서는 세입재원 전액이 본 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 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전입금과 서울시로부터 전입된 법정전입금, 기초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, 자체수입, 지방교육채 및 기타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조정의 여지가 없음.
- 순세계잉여금(이월금)을 본 예산 세입에 500억원 편성하였는데 2006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이 이에 못미치게 됨은 2006년도 세입에 편성되어 집행된 지방채사업비 758억 원(명퇴수당 318억원,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1/2 440억원)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에 발행하지 않고 2007년 회계의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시켰기 때문임.
- 신도초 부지매각대금은 당시 은평뉴타운 지구내에 신설 예정인 초·중 부지매입과 연계하여 신도초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협의과정이 원만하지 못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됨.
- 추경 세입 지방교육채 중 상립초 증액은 부지매입비 부족분 93억 1,500만원을 세입재원에 편성한 것이며, 강일중의 경우는 원래 2007년도 본 예산에 국고부담 지방채 세입으로 135억 2,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도 보통교부금

110 (제168회-교육문화제1차)

- 으로 지원 해 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육체 세입예산을 삽감하여 편성함.
- 세출면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 및 지방채 상환액 등 경직성 경비나 필요경비인 약 4,086억원은 조정할 여지가 없으나 교육환경개선비 또는 교육사업비로 계상된 1,314억원은 조정이 가능함.
 - 예산의 편성·제출권은 집행부에 그 권한이 주어져 있고 심의·의결하여 확정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바, 지방의회의 이 권한행사는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의사표시임. 따라서 어떤 예산을 의회에서 전액 삽감하였다면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의회의 의사표시임. 이와 관련하여 노조사무실 임대료, 비품비가 금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임.
 - 지원기관시설 총액 예산편성 중 유아교육진흥원 설치(13억 8천만원) 및 중앙평생학습관 설치(10억 194만원)의 경우는 금회 추경안 제출이전 「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」를 개정한 후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.
 - 학생교육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「영어체험교육원」은 설치비로 금회 추경에 91억 8,800만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그 설립목적은 학교교육계획과 연계한 초·중학생 합숙 영어전용시설 운영, 영어교사 장·단기 심화 합숙연수를 통한 영어수업 능력 신장, 지역거점 영어체험센터 및 단위학교 영어전용 교실 운영·지원의 중추적 역할 등으로 그 설립목적의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하더라도,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제4호에 의거 가평교육원의 교육내용을 영어체험교육으로 전환 운영하는 것은 가하나, 별칭이 아닌 공식 명칭을 「서울영어체험교육원」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함.
 - 본 예산 성립 후 교육청 현안사업으로 반영된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명	사업내역	추경 예산액	비고
시설비	영어체험교육원 시설	경기도 가평 학생교육원내 (시설비 및 체험실 설치비)	9,188	특교사업
학교운영비	초등학교 운영비 증액	공립초등학교 운영비 현실화	10,814	
일용잡금 퇴직금	비정규직 퇴직금 증액	비정규직 퇴직금 단위학교(기관) 지원	10,000	
토지매입	학교운동장 부지매입	남부 세일중 토지매입비	12,239	
계		/	42,241	

-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의 경우 기정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에 따라 모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관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임 (2007년도 추경에 약75억원이 전액 반영된다면 2006년도보다 약 18억원 증액된 규모임).
- 맞춤형복지의 경우 금번 추경에 85억 300만원이 반영된 바, 이는 서울시교육특별회계 행편에 따라서 다른 사업과 똑같이 본 예산에 20% 정도 감액하여 반영함으로써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됨. 지금대상은 공·사립학교 교직원, 행정기관 공무원 전체가 대상임.
-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 정책사업, 역점사업, 민원성 현안사업 등이 우선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역청간, 지역청내의 지역간, 학교간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. 또한 연차계획이나 가용예산 범위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

위를 정할 때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.

-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액요인이 있는 급여 불용예상액(213억), 사립학교 운영비 여유분(16억 6,399만원) 등을 감추경한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적극적으로 감액할 부분을 파악하여 예산이 긴요하게 요구되는 분야에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.

□ 참고자료

- 서울시 비법정전입금 중 교육격차해소사업내역

사업명	학교수	지원내역	예산액	비고
화장실 개선	52	207동(공립23, 사립 29)	13,158	
책 결상교체	282	242,145조(공립 217, 사립 65)	18,368	
칠판교체	110	3,341개(공립 27교, 사립 83교)	2,901	
방과후학교	221	중점학교 65교, 프로그램 운영 156교 (공립143, 사립 78)	2,860	
계	665	/	37,287	

- 지방재정법 제45조 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- 200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

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교부금, 보조금, 전입금 등 목적지정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.

-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9조 (학생교육원 업무)

제 19 조 (업무)

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(개정 2007. 1. 4).

1.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
2.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
3.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4.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
5. 학생수련을 위한 분원 및 야외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